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수익증권을 매수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 자 신 탁 명 :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2. 자산운용회사명 : 피델리티 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명:
   1) 동양증권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전화: 1588-2600 (www.myasset.com))
   2) 메리츠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메리츠증권, 전화: 1588-3400 (www.imeritz.com))
   3) 부산은행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59-4, 전화: 1588-6200 (www.pusanbank.co.kr))
   4) 우리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전화: 080-365-5000(22) (www.wooribank.com))
   5)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주소: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전화: 02-3702-3114 (www.scfirstbank.com))
   6) 한화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전화: 1544-8282 (www.koreastock.co.kr))
   7)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주소: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 전화: 1588-1771, 1544-3311 (www.kr.hsbc.com, www.hsbcdirect.co.kr))
   8) 굿모닝신한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전화: 3772-1000 (www.gmsh.co.kr))
   9) 삼성증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전화: 1588-2323 (www.samsungfn.com))
   10) 우리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우리투자증권빌딩, 전화: 02-768-7000 (www.wooriwn.com))
   11) 하나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전화: 1588-1112 (www.clickhana.co.kr))
   12) 한국외환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전화: 1544-3000 (www.keb.co.kr))
   13) 신영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전화: 1588-8588 (www.shinyoung.co.kr))
   14) 교보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전화: 1544-0900 (www.kyobotrade.co.kr))
   15) 경남은행 (주소: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전화: 1588-8585(www.kyongnambank.co.kr))
   16) 한국씨티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전화: 1588-5753 (www.citibank.co.kr))
   17) 현대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전화: 1588-6611(www.youfirst.co.kr))
   18) 광주은행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전화: 1588-3388(www.kjbank.com))
   19) 신한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20, 전화: 1544-8000(www.shinhan.com))
   20) 대우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전화: 1588-3322(www.bestez.com))
   21) 한국산업은행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전화: 1588-1500 (www.kdb.co.kr))
   22) 하나대투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전화: 1588-3111 (www.hanadaetoo.com))
   23) 대신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전화: 769-2000 (www.daishin.co.kr))
   24) 하나은행 (주소: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전화: 1588-1111(www.hanabank.com))
   25) 동부증권 (주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전화: 1588-4200 (www.winnet.co.kr))
   26) 한국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한국투자증권빌딩, 전화: 3276-5000 (www.truefriend.com))
   27) 유진투자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전화: 1588-6300 (www.eugenefn.com))
   28) 대구은행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전화: 1588-5050 (www.daegubank.co.kr))
   29)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주소: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전화: 3707-0400)

※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보전하지 않습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08년 3월 27일

5. 투자설명서 비치□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및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fidelity.co.kr)
   나. 판매회사의 본, 지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쪽)

1. **명칭 :** 피델리티코리아 –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 – 자(E)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개방형, 추가형,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모자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피델리티 자산운용주식회사

II. 투자정보(☞본문 7쪽)

구분	주요내용
1. 투자목적	–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 – 다만,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
2. 주요투자전략	– 모투자신탁을 통해 주식형 외국간접투자증권에 자산총액 최고 100%까지 투자 – 환율변동 위험에 대해 헤지하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 수준
3. 주요투자위험	–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및 환율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7등급 중 4등급**으로 **중간 수준** – 따라서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주로 적합**
5. 기준가격	–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를 발행 수익증권 총수로 나누어 매일 산출 –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피델리티 자산운용 인터넷 홈페이지(www.fidelity.co.kr)에서 확인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 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38세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14개	37,894억원	일임계좌 운용 및 보험자산 운용기획 등

*본 자펀드는 최고 100%까지 해당 모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본문 제3부 I.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펀드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모 펀드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펙 웅)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7. 투자실적 추이(연평균 수익률)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단위: %)

기간	최근 6개월('06.07.01. ~'06.12.31.)	최근 1년('06. 01. 01. ~'06. 12. 31.)
투자신탁	23.67%	8.73%
비교지수*	28.25%	14.99%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in KRW*100%

III. 수수료·보수, 과세(☞본문 14쪽)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본문 18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자투자신탁 명칭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A)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스타만들기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 (I)	퇴직연금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 (CP)
수익증권 판매 기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관투자자 등	기관투자자 등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선취판매수수료 1)		1.00%	–	–	–	–
	환매수수료 (90일미만 환매시)1)		-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30%**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보수	운용회사보수	연 0.300%	연 0.300%	연 0.300%	연 0.300%	연 0.300%
		판매회사보수	연 0.600%	연 1.100%	연 1.100%	연 0.100%	연 0.500%
		기타보수	연 0.068%	연 0.068%	연 0.068%	연 0.068%	연 0.068%
		보수합계	**연 0.968%**	**연 1.468%**	**연 1.468%**	**연 0.468%**	**연 0.868%**
	기타비용		연 0.150%	연 0.012%	연 0.009%	연 0.010%	연 0.009%
	총보수·비용비율 2)3)		**연 1.118%**	**연 1.480%**	**연 1.477%**	**연 0.478%**	**연 0.877%**

주1) 선취판매수수료는 매입시점에서, 환매수수료는 90일 미만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2) 총보수·비용비율은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냄
주3) 총보수·비용비율 산정시 모투자신탁에서 발생되는 기타 비용, 피투자펀드의 보수가 포함되지 않았음

2. 과세

수익자는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07. 5. 1. 현재 **개인 15.4%, 일반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 본문참조 요함

3. 매입·환매절차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5시) 중에 매입 또는 환매할 수 있습니다.

구분	오후 5시 이전	오후 5시 경과후
매입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 D+1 자금납입 (5시 이전) / 수익증권 매입 (D+1 기준가 적용)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D → D+1 → D+2 자금납입 (5시 경과) / 수익증권 매입 (D+2 기준가 적용)
환매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10영업일(D+9)에 **환매대금 지급** D → D+3 → D+9 환매청구 (5시 이전) / 기준가 적용 / 환매대금 지급	–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 적용** – 제11영업일(D+10)에 **환매대금 지급** D → D+4 → D+10 환매청구 (5시 경과) / 기준가 적용 / 환매대금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의 상담센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투자설명서 본문 1페이지 참조)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_____(점포명)_____(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_____(은)는 (고객 성명)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하였습니다.

○○○○. ○○. ○○

판매직원/취득권유인_____서명 또는 (인)

용어 정의

“일반사무관리회사”라 함은 HSBC 펀드서비스(주)를 말합니다.

“신탁재산”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재산을 말합니다.

“영업일”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판매회사”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판매회사를 말합니다.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합니다.

“투자자”라 함은 장래 수익자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이라 함은 피델리티코리아 -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를 말합니다.

“법령”이라 함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및 기타 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을 말합니다.

“자산운용회사”라 함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를 말합니다.

“모투자신탁”라 함은 피델리티코리아 – 글로벌 주식형 모재간접투자신탁을 말합니다.

“기준가격”이라 함은 신탁약관에 따라 산정된 투자신탁의 수익권의 가치를 말합니다.

“신탁약관”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및 추후에 변경되는 신탁약관을 말합니다.

“수탁회사”라 함은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을 말합니다.

“수익권(들)”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을 얻을 권리를 말합니다.

< 본 문 >

제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피델리티코리아 -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2.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3. 종류 : 개방형, 추가형, 주식형 증권간접투자기구, 모자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4. 자산운용회사 :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단 모투자신탁의 경우 운용·운용지시업무는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매니지먼트 홍콩(Fidelity Investment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에게 위탁하였으나, 운용·운용지시업무의 위탁에 따른 책임은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2005년 3월 3일 설정
6. 수탁고 추이

(단위/원)

연도	현재 (2006. 12. 31.)	6개월전 (2006.06.30.)	1 년전 (2005. 12. 31.)	1년 6개월 전 (2005. 6. 30.)
수탁고 금액	275,434,225,945.00	318,299,988,796.00	203,544,868,839.00	65,136,390,495.00
수탁고 증가율 *	-13.47%	56.38%	212.49%	0.00%

* 6개월 전 수탁고 대비 증가율

7. 해지사유 : 해당사항 없음.
8. 모자펀드의 구조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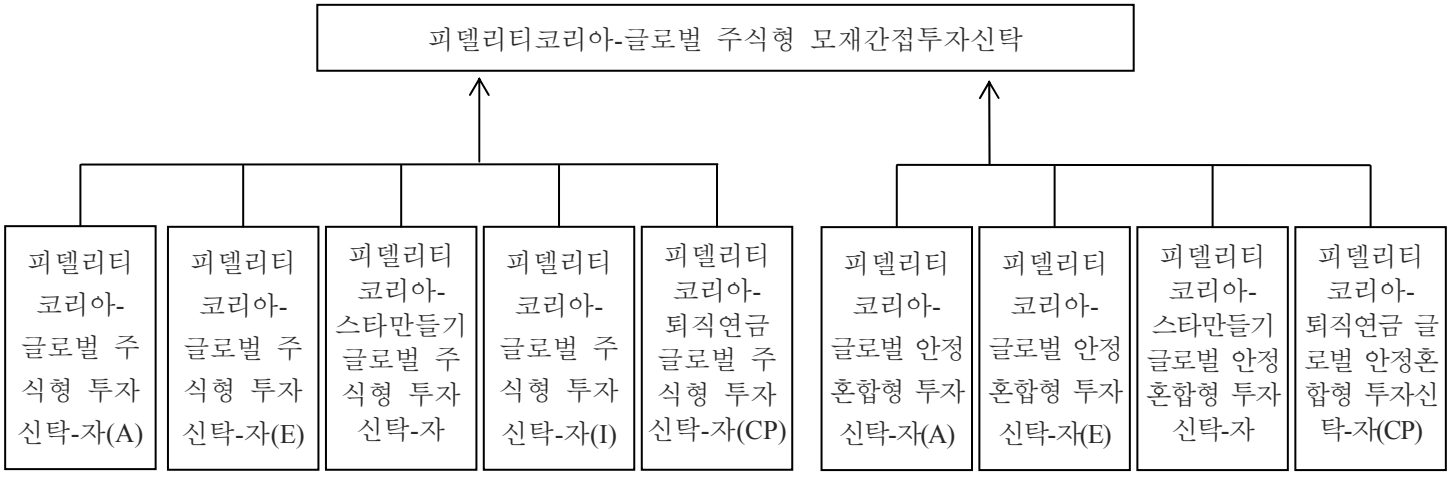

주)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안정혼합형 투자신탁-자 펀드 전부는 피델리티 코리아-글로벌 채권형 모투자신탁에도 투자하고 있으며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안정혼합형 투자신탁-자(A)는 현재 판매되지 아니함.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주식에 대한 전세계적인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추구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국제적인 배정은 여러 개별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그 자산의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하고,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산의 가치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배분은 개별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도에 의하고 있고 지수중립적인 비중으로부터 현저히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모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외국간접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최고 100%까지 투자합니다. 그러나 이 모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모투자신탁은 해외 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해외투자자산의 가격변동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선물환거래 등을 활용할 예정이며,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수준으로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주요 투자전략

가. 당해 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전세계 각 주식시장의

투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 주식 포트폴리오매니저로 구성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산배분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자산배분 결정을 내립니다.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매니저들("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은 주식선정에 있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기본 과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우수한 경영 능력, 세계적인 경쟁력, 건전한 재무구조, 높은 유동성과 낮은 타인자본조달비율을 보이는 회사들을 선호하며,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회사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회사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탁자산 내 편입되는 산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21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주요 투자위험

당해 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

구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 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환율위험	어떤 투자증권은 한국 원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므로 투자신탁의 원화 가치는 투자신탁이 매입한 유가증권의 통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된 투자위험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 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 세계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시장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전세계의 다양한 성장동력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영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과 일본은 세계 경제의 주요 시장입니다."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27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가치는 고도로 분산된 주식 (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채권 포함)의 시가에 따라 결정되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바, 7등급 중 4등급에 해당하는 중간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공격적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아래분류에서 E 및 N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피델리티자산운용회사는 투자위험 등급 및 해당 투자신탁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 분류]

A. 신중한 투자전략에 적합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거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현금을 보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들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B. 신중한 투자전략에 적합하며 자산가치를 보호할 목적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수반되는 위험을 제한하면서 현금/통화 투자신탁 보다는 높은 수입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며 또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다양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C.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중간 내지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이나 국채 보다는 높은 자본성장을 추구하거나 자본성장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합합니다.

D. 이 투자신탁은 피델리티 그룹이 운용하는 펀드 또는 피델리티 그룹이 운용하는 계정에 자산을 보유하는 투자자들만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E.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처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나 공격적인 채권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F. 분산투자 및 성장 지향적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G. 성장형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GG. 가치 지향적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H. 성장형 투자 전략에 적합하며 매우 높은 시장 변동성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이러한 투자신탁은 투자자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 중 적은 부분만을 차지해야 합니다.

I.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중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현금이나 국채 보다는 높은 자본성장을 추구하거나 자본성장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주로 적합합니다.

J. 자본성장을 추구하지만 중간 수준의 위험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주식, 채권 등의 전통적인 자산 구분에 비해 자산 구분의 다양화를 추구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S. 부동산 회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포트폴리오로부터 수입과 성장을 추구하는 초보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익스포저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기존 투자자들에게도 적합합니다.

X. 이머징마켓은 선진시장 보다 높은 수입과 성장 잠재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머징마켓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 에 대한 투자는 투자기간이 장기적인 투자자들에게만 적합합니다. 이머징

마켓 채권은 투자전략의 다양화를 위한 일환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투자대상이지만 위험 회피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위험 분류]

K. 매우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현금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현금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7등급)

L.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현금, 국채 및/또는 회사채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6등급)

M. 중간-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와 회사채 및 주식 (주식시장) 투자자산(해당하는 경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V. 중간 내지 낮은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와 회사채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U. 중간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국채 및 회사채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5등급)

N. 중간 위험: 투자신탁의 가치는 고도로 분산화되어 있거나 또는 국채나 회사채 투자자산을 포함하고 있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에 속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시장에 대한 투자자 익스포져의 핵심을 구성합니다. (4등급)

O. 중간 내지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투자신탁의 기준통화 이외 통화로 표시된 주식을 포함하는 기초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되며, 이에 따라 환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대규모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 또는 핵심형 투자신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3등급)

P.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국가에 집중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환위험 및 시장변동성이 수반되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그러한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들에 비해 공격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등급)

R. 매우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환위험 익스포져로 인한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거나 혹은 소규모 회사나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또는 시장 업종에 대한 독점적 투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수반하는 기초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1등급)

T. 중간 내지 높은 위험: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의 가치는 환위험을 발생시키는 타 국가의 주식을 포함하는 주식 투자자산의 시가에 근거하여 매일 산정됩니다. 투자자의 고유 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환율 변동으로 인한 추가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투자신탁은 대규모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주된(mainstream) 투자신탁 또는 핵심 투자신탁에 속할 수 있습니다. (1등급)

* 위 등급은 오직 피델리티 그룹의 펀드 전체와 관련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수준을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이는 단지 안내지침에 불과하며, 운용회사, 자산 유형, 관련 시장 및 통화에 따른 과거 운용실적에 관한 피델리티 그룹의 경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신탁약관에 명시된 기발생된 부채, 수수료,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을 차감한 금액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며, 산정한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에 통보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자산운용회사는 통보 받은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를 통하여 매일 공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자신들의 영업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준가격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결정되며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과 함께 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단, 이 투자신탁은 재간접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각 자투자신탁의 수익증권간 부과되는 보수 및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각 자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책임운용전문인력

성 명	직위	주요 경력 및 이력
장성문	투자서비스 담당 이사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 상기 책임 운용전문인력이 현재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수와 운용자산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43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 자펀드는 최고 100%까지 해당 모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본문 제3부 I.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펀드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으며 실제 모 펀드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퐥 응)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7. 투자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 게시된 이 투자신탁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기간	최근 6개월('06.07.01. ~'06.12.31.)[1]	최근 1년('06. 01. 01. ~'06. 12. 31.)

투자신탁	23.67%	8.73%
비교지수[2)]	28.25%	14.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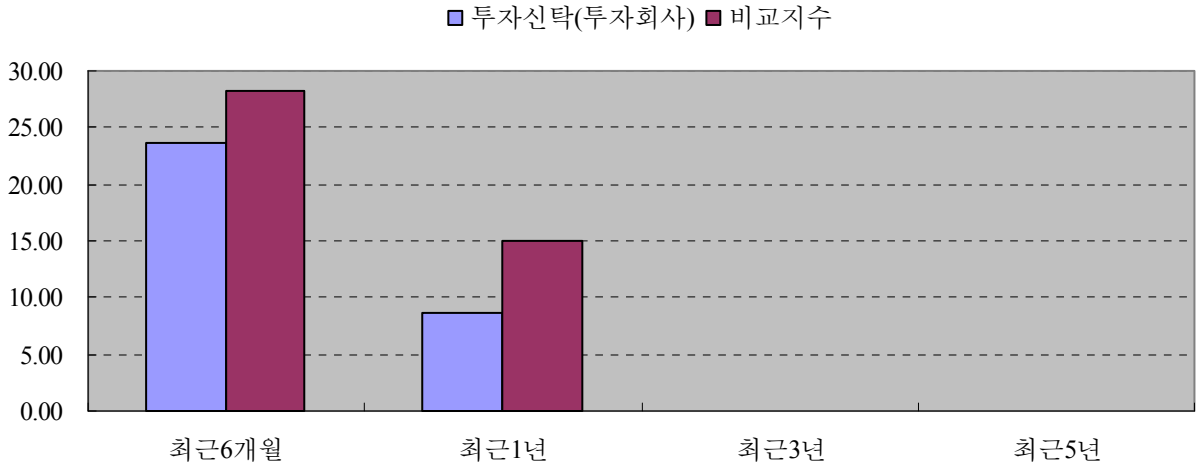

1) 6개월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하였음.

2)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in KRW*100%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도	1년차 ('05. 03.03. ~'06. 03. 02.)	2년차 ('06.03.03. ~'06.12.31.)[1)]
투자신탁	20.94%	5.99%
비교지수[2)]	18.46%	1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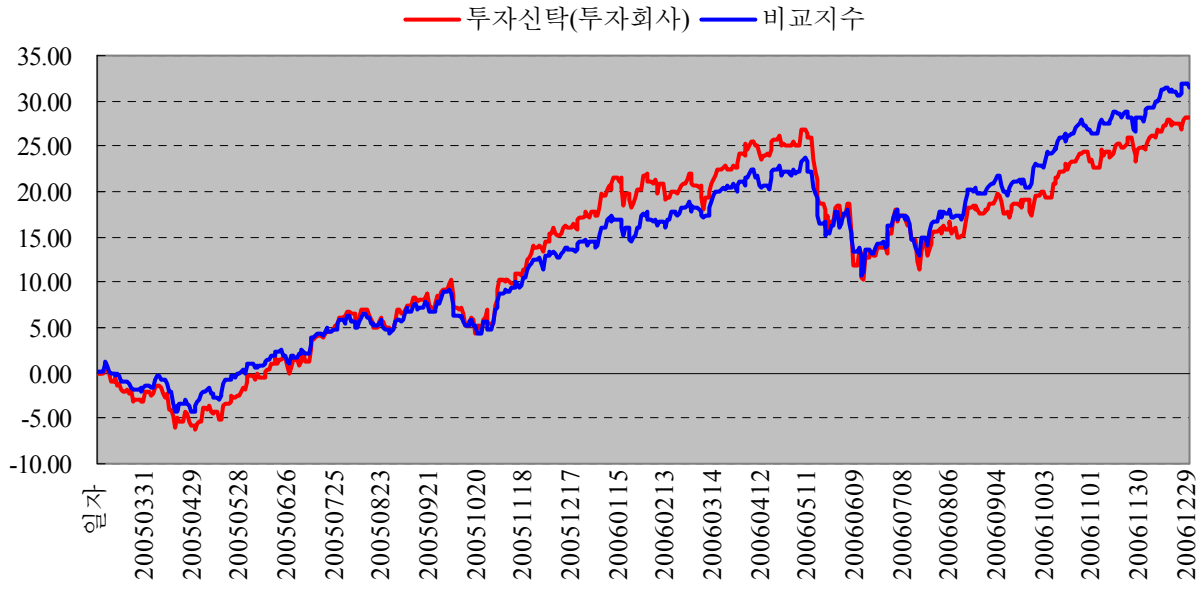

1) 10개월간의 수익률임.

2) 비교지수 = MSCI WORLD Index hedged in KRW*100%

III. 수수료·보수, 과세

1.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가. 당해 투자신탁

(1)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신탁약관 제21조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를 말합니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별로 아래의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
-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90일 이상인 경우: 이익금의 0%

[자투자신탁간 수수료의 차이 비교]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A)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스타만들기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I)	퇴직연금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CP)		
선취판매수수료	1.00%	-	-	-	-	수익증권 매입시	
환매수수료	-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70%	이익금의 30%	환매대금 지급시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를 펀드에 반환함.
합계	환매수수료 (적용되는 경우)와 선취판매수수료의 합						

나.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또는 지급금액)	지급시기	비고
선(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여기서 "수익자"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투자신탁을 말함
환매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가.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분류	지급비율	산정방식	지급시기	비고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300%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	
판매회사 보수	연 1.100%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	
수탁회사 보수	연 0.040%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1)]	최고 연 0.028%	매일 발생	분기별로 지급	
기타 비용[2)]	연 0.012%		사유발생시 지급	
총 보수•비용 비율	연 1.480%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최고 0.028%임. 그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낮아질 수 있음.

2)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6년 1월1일 ~ 2006년 12월 31일)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자투자신탁간 보수율의 차이 비교]

분 류	지급비율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A)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E)**	**스타만들기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I)**	**퇴직연금 글로벌 주식형 투자신탁-자(CP)**
자산운용회사 보수	연 0.300%	연 0.300%	연 0.300%	연 0.300%	연 0.30%
판매회사 보수	연 0.600%	연 1.100%	연 0.100%	연 1.100%	연 0.50%
수탁회사 보수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연 0.04%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1)]	최대 연 0.028%	최대 연 0.028%	최대 연 0.028%	최대 연 0.028%	최대 연 0.028%

1)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는 최고 0.028%임. 그러나,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전체 자산총액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는 낮아질 수 있음.

나.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비용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라 수탁회사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되고 이로부터 인출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및 투자신탁과 관련한 납세신고서 작성비용
2.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3.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4.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의 고의, 과실, 신탁약관 위반 없이 투자신탁 관련 소송에 따라 부담하는 책임을 포함)
5.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 모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분류	지급비율	산정방식	지급시기	비고
자산운용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판매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없음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기타비용[1]	연 0.011%		사유발생시 지출	
총 보수•비용 비율 (피투자펀드 보수 포함)[2]	연 0.610~0.810%			

1) 기타 비용은 유가증권 매매거래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직전 회계연도(2006년 1월1일 ~2006년 12월 31일)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음.
2)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피투자펀드)에서 징구하는 보수를 포함한 비율로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보수•비용 수준을 나타냄. 피투자펀드보수는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각 간접투자기구(피투자펀드)에 부과되는 운용보수(피투자펀드로부터 환급받는 금액을 반영함)를 나타내며 각 피투자펀드의 투자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다만, 피투자펀드에서 발생되는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음.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예상비용은 다음과 같이 예상되는 바, 이러한 비용은 실제운용비용 및 투자자의 수익증권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만원)

투자기간	1년차 (1050만원)	3년차 (1158만원)	5년차 (1276만원)	10년차 (1629만원)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1]	15.65	49.35	86.49	196.8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펀드 보수포함)	21.95-24.05	69.22-75.83	121.31-132.9	276.07-302.47

1)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예상비용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주)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산출한 것임.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선취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음.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가.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수익자에게 분배되는 수익의 분배금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 편입되어 있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주식과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분배금, 배당금, 이자 및 유가증권의 매매차익 등을 원천으로 지급되며, 이 수익의 분배금은 세제상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바, 신탁재산에 들어오는 수익의 분배금, 배당금, 이자 등에 과세한다면 이중과세가 되므로 이의 방지를 위하여 세법은 신탁재산에 한하여 특례를 두어 매월 각 신탁재산에 발생한 해당세액을 익익월에 환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신탁에서는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나. 수익자에 대한 과세

(1)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신탁기간 종료일, 투자신탁의 결산일, 환매일, 원본전입일, 신탁계약기간 연장일에 원천징수를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및 선물의 매매 차익 및 모투자신탁이 이와 같은 매매차익을 자투자신탁에게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며,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2) 소득에 대한 과세율:
- 개인투자자의 경우: 소득의 14% (주민세 포함 15.4%)
- 일반 법인의 경우: 14%

다. 기타 유의 사항

국내외 상장 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매 또는 평가차익과는 달리 외국 주식에 투자한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분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등(개인투자자의 경우 소득의 15.4%, 일반 법인의 경우 14%)이 부가됩니다. 따라서 본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국내외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간접투자증권을 매수하는 경우보다 과세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이 국외 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이 속하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에 동 외국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자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14%를 한도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하므로 외국납부세액이 소득의 14%를 초과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환매, 분배

1. 수익증권의 매입

가. 투자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영업일에 수익증권을 매입할 수 있습니다. 각 영업일의 오후 5시까지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해당 영업일에 처리되며, 영업일의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된 주문 및 자금은 다음 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음 영업일에 처리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매수청구서의 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소정의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거나, 신청서 양식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결과로 발생하는 직·간접적 손실 또는 결과에 대하여 투자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나. 최소매입금액: 이 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현재 자산운용회사가 최소매입금액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투자자가 매입하는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판매가격은 이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이 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매입 주문은 판매회사가 주문을 실제로 수령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라.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사정이 없는 한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34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2. 환매

가. 수익증권의 환매

(1) 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당해 투자신탁 약관, 동 설명서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양식을 작

성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는 각 영업일에 오후 5시 전까지 수익증권 환매 주문을 수령합니다. 판매회사가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익증권 환매요청을 수령한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그밖에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하는 사유(“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제6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 수익자는 법 제62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에 환매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이 투자신탁의 자금으로 환매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아닌 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날에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4) 실질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증권예탁결제원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은 지체 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5) 현물보유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에 기재된 판매회사를 통하여 자산운용회사에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수익증권의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수익자가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청구한 날(판매회사의 영업일임. 당일 포함)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이 됩니다.

환매대금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포함)로부터 10 영업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환매대금은 관련되는 환매수수료 및 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됩니다.

오후 5시 경과 후에 수령한 환매청구는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실제로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처리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자가 판매회사에 실제로 환매를 청구한 날(당일 포함)로부터 11영업일에 지급됩니다.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 따라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 전원(각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 포함)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

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른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수익증권환매청구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환매 연기, 부분환매, 환매제한 등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35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이익분배: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제반 조세 등을 공제한 후 수익자에게 분배하되, 수익자는, 수익자가 달리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추가로 매입하는 데 사용한다. 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수익자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자산운용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신탁약관 제14조 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이익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당일포함) 11영업일 전에 판매회사에 청구해야 합니다.

※ 분배관련 추가적인 유의사항이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3. 분배관련 유의사항'(37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가.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을 최고 100%까지 모투자신탁이 발행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나.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기본방침

모투자신탁은 해외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써 그 투자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전세계 각 주식시장의 투자가치를 판단하기 위해 지역별 주식 포트폴리오매니저로 구성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자산배분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자산배분 결정을 내립니다.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매니저들("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은 주식선정에 있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상향식(bottom-up) 방식을 활용하며 이는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 기본 과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우수한 경영 능력, 세계적인 경쟁력, 건전한 재무구조, 높은 유동성과 낮은 타인자본조달비율을 보이는 회사들을 선호하며, 확고한 확신을 가지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하위 포트폴리오매니저는 주식선정 절차의 일부로서 정기적으로 회사 탐방을 실시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회사탐방을 통하여 그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사업 역량, 수익 수준, 재무 전략 및 장기적 성장 전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신탁자산 내 편입되는 산업군과 종목수를 분산함으로써 해외 간접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관리합니다.

아래 펀드는 글로벌 주식형 모재간접투자신탁이 투자할 대표적인 투자대상 펀드를 기재한 것입니다. 아래 투자대상 펀드목록은 예시에 불과하며 모든 투자대상 펀드를 열거한 것은 아닙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그 재량에 따라 아래 열거된 투자대상 펀드목록에 펀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상기 펀드목록은 사전 통지 없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 펀드들은 Fidelity Fund Management Limited가 운용하고 있습니다.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피델리티펀드 미국펀드	1,767,422,344	본 펀드는 미국 유가증권으로 이루어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자본증식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주식선정을 통해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주력하며 업종배분은 부차적인 고려사항입니다. 본 펀드에는 특정한 제약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 펀드의 주식 종목 및 업종 배분은 벤치마크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매니저는 투자매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 회사 또는 업종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2	피델리티펀드 미국다이버시파이드펀드	167,723,735	본 펀드는 중소형 및 대형 자본 회사들의 미국 주식 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성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미국 주식시장에 중점적인 익스포저를 두면서 업종 및 시장자본을 다양화하고자 합니다. 자산배분은 대체로 벤치마크와 일치하며 이에 따라 투자방식과 투자대상회사의 규모 면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됩니다. 투자스타일은 주식선정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펀드는 중형주에 약간 높은 선호도를 유지합니다.
3	피델리티펀드 아시아부동산 증권펀드	217,028,524	본 펀드는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부동산업종에 우선적으로 종사하는 회사들의 유가증권 및 동 지역에 소재한 기타 부동산관련 투자자산에 주로 투자하여 수입과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대체로 투자스타일의 특징은 가치주에 약간 치중하면서 전체적으로 중립적인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는 통상 상향식과 하향식 투자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선정 과정에 착수합니다.
4	피델리티펀드 호주펀드	938,052,512	본 펀드는 호주 주식으로 이루어진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상향식 주식선정 방식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대기업과 중형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이들의 과거 실적, 경영, 신용도 등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니저가 세운 투자기준에 부합하는 소형 기업들의 편입도 검토됩니다. 10대 편입종목이 포트폴리오의 50% 정도를 차지하며, 총 40개 정도의 종목에 투자합니다.
5	피델리티펀드 차이나포커스 펀드	5,041,076,001	본 펀드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얻는 비중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에 상장된 중국기업의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중국에 대해 100%의 직접적인 익스포저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기업 펀더멘털이 튼튼하고 지속적인 수익성장성을 갖춘 중소형주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스스로 강한 확신이 가는 주식에 상당부분 투자하고, 벤치마크를 고려하나 전체적 종목별 투자비중은 오로지 상향식 종목선정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6	피델리티펀드 유로블루칩 펀드	1,060,316,234	본 펀드는 유럽경제통화동맹(EMU) 회원국의 대형주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다른 국가들이 유럽경제통화동맹에 추가로 가입하는 경우 동 국가들에 대한 투자도 동 펀드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펀드명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본 펀드는 “블루칩” 또는 “초대형주(mega-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caps)"라고 불리는 대형주를 편향된 투자를 유지합니다.
7	피델리티펀드 유럽 어그레시브 펀드	3,484,827,976	본 펀드는 범유럽 회사의 주식형 유가증권에 우선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벤치마크 지수 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시장 보다 높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진정한 주식 선정 방식의 펀드로서 주식선정 과정을 통해 업종 익스포저를 달성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중소형주 및 대형주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은 벤치마크 지수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8	피델리티펀드 유럽성장펀드	22,384,195,576	본 펀드는 주로 범유럽 주식으로 구성된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진정한 주식선정 방식의 펀드입니다. 포트폴리오는 투자권한에 대한 제한 없이 오로지 종목별로 구축됩니다. 펀드매니저는 가장 매력적인 투자기회를 제공한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하며 이에 따라 포트폴리오 구성은 벤치마크인 FTSE Europe Index의 구성과 지역 및 업종 투자비중에 있어 상당부분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피델리티펀드 유럽대형주 펀드	531,645,779	본 펀드는 영국 및 유럽대륙의 대형주로 구성된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로부터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매니저는 MSCI Europe Index 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장보다 높은 수익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통상 매니저는 종목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대비 ±5%, 업종에 대해서는 벤치마크 대비 ±10%로 투자비중을 제한합니다.
10	피델리티펀드 유럽소형주 펀드	2,429,938,046	본 펀드는 영국 및 유럽대륙에 상장된 소형주로 이루어진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를 통해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통상 성장주가 포트폴리오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나머지는 회복주와 가치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는 매출액, 매출성장의 가시성 및 충분한 현금흐름 등의 투자기준에 따라 성장주에 속하는 선별된 주식에 투자합니다. 이러한 주식에는 통상 기술, 사업서비스, 외주, 오락 및 건강 관련 회사의 주식이 포함됩니다.
11	피델리티펀드 독일펀드	1,704,831,050	본 펀드는 독일 주식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 자본 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다. 펀드매니저는 지수보다 높은 지속적인 장기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펀드는 상향식 투자원칙을 사용하며, 업종보다는 개별 회사의 우량성에 집중합니다. 펀드는 자산의 일부를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 있지만 주로 대형주를 보유하고 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성장주에 편중되어 있으며 35-40개의 개별 종목에 비교적 집중되어 있습니다.
12	피델리티펀드 대중국펀드	378,741,484	본 펀드는 주로 홍콩, 중국 및 대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로 구성된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성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펀드 매니저는 경영 능력, 회사 전략 및 주주 가치 창출이라는 면에서 장기적인 과거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욱 가치있고 의미있는 기초 분석을 제공하는 대형주와 중형주에 집중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러한 회사들은 배당금 지급에 더욱 관대합니다.
13	피델리티펀드 인도네시아 펀드	375,621,126	본 펀드는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장기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는 사업의 상당 부분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지는 인도네시아 이외 지역의 상장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는 주식선정방법을 사용하며 경제 자율화 증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사업전망이 밝은 선별된 업체들로 구성된 특정 업종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14	피델리티펀드 재팬 어드밴티지 펀드	255,009,875	본 펀드는 일본의 지방증시 및 도쿄 장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하여 일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에 우선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다양한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유동성이 충분한 기업에 투자합니다. 포트폴리오는 일반적으로 90-110개의 종목으로 구성되며,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고 업종별 배분은 종목선정의 결과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5	피델리티펀드 일본고배당주 펀드	166,883,536	본 펀드는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들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 및 일본의 주식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배당 이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주로 주식선정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합니다.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6	피델리티펀드 일본펀드	4,531,671,606	본 펀드는 일본주식의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통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펀드는 대형주와 소형주 모두에 투자합니다. 펀드의 벤치마크는 TOPIX이며, 이는 동경증권거래소(TSE) 제1부에 상장된 모든 회사들의 자본가중지수입니다. 펀드는 벤치마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들, 즉 TSE 제2부, TSE Mother, 장외시장 및 기타 일본의 지역 시장에 상장된 회사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통상 다양한 산업으로 이루어진 90개에서 110개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17	피델리티펀드 일본소형주 펀드	364,640,288	본 펀드는 일본의 시가총액 1천억엔 이하의 일본 중소형주에 주로 투자하여 장기 자본 가치상승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의 벤치마크는 Russell/ Nomura Mid Small Cap Index 입니다. 펀드가 보유중인 주식은 주로 '성장주'이며, 강한 매출 및 수익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성장이 몇 년간 지속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펀드매니저가 판단하는 회사의 주식에 투자합니다.
18	피델리티펀드 한국펀드	579,778,045	본 펀드는 주로 한국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펀드매니저는 상향식 형태로 주식을 선정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대기업과 중형 기업들을 선호하는데 이들의 과거 실적, 경영, 신용도 등이 더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19	피델리티펀드 말레이시아 펀드	588,830,901	본 펀드는 주로 쿠알라룸프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된 주식 및 기타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본 펀드는 말레이시아에 많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말레이시아 이외 지역의 상장 기업들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펀드 운용의 특징은 주식선정이 강조된다는 점입니다. 매니저는 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기본으로 엄격한 선정기준에 의해 투자항목들을 선정합니다.
20	피델리티펀드 싱가폴펀드	453,883,136	본 펀드는 싱가폴 주식들로 이루어진 집중화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는 싱가폴 경제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으나 싱가폴 이외 지역에서 거래되는 주식에도 투자될 수 있습니다. 펀드매니저는 상향식 투자방식을 활용하며 특별한 투자스타일 제약은 없습니다. 포트폴리오는 개별 주식별로 저평가된 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축됩니다. 펀드매

	펀드명	펀드규모 (USD) (2007.5.31.)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니저는 일반적으로 자기자본 수익률, 투자자본 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수익성이 가속화되거나 개선되는 기업들을 선호합니다.
21	피델리티펀드 대만펀드	183,493,926	본 펀드는 주로 대만 주식 또는 기타 대만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장기적인 자본 가치상승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는 수익의 상당부분을 대만으로부터 얻는 대만 이외 지역의 회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시장의 가장 큰 매력이 선진시장 대비 기업들의 성장잠재력이 큰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펀드매니저는 공격적인 성장위주의 운용방식을 활용합니다.
22	피델리티펀드 태국펀드	792,275,583	본 펀드는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으로 이루어진 적극적으로 운용되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성장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펀드매니저의 투자스타일은 상향식 주식선정방식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펀드매니저는 강한 수익 성장성, 일관된 경영전략, 건전한 재무구조, 원활한 현금흐름, 양호한 기업 지배구조를 가진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선호합니다. 펀드매니저는 대형 블루칩 주식을 선호하는데, 회사의 펀더멘털과 주식가치를 모두 분석한 후 매매를 결정합니다.

2. 투자위험

구분	주된 투자위험
투자원금손실위험	투자신탁의 투자 원금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보장되거나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투자 원본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또는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투자자들을 제외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시장위험 및 개별 유가증권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간접투자기구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위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경우, 그러한 기초투자자산의 가치는 금리와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변동되게 됩니다. 채권 등 고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순자산가치는 금리 및 환율의 변동에 따라 변합니다. 몇몇 투자신탁은 가격하락 및 자본손실의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고수익 유가증권에 투자할

구분	주된 투자위험
	수 있습니다. 또한 중간 등급 유가증권, 등급이 낮은 유가증권 및 이에 상당하는 등급이 없는 유가증권은 등급이 높은 유가증권 보다 수익 및 가격의 변동 폭이 더 넓을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은 환율위험을 헤지하고 목표 환헤지 비율은 최고 95%수준이지만,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분산투자 관련위험	다수의 국가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어느 한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적어지는 대신에 많은 국가의 위험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통화로 표시된 투자자산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은 통화가치의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수익권 가치에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위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간접투자기구는 전부 혹은 일부를 신흥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증권이 선진국 시장의 증권보다 변동이 더 심하고, 따라서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몇몇 신흥시장의 경제적 전망이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전세계의 상품가격에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의 국가에 있어서는 특히 해당국의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이러한 위험을 이해하고 관리한다 하더라도 각 투자신탁 및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은 이러한 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관련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환율위험	어떤 투자증권은 한국 원화가 아닌 통화로 표시되므로 투자신탁의 원화가치는 투자신탁이 매입한 유가증권의 통화 환율 변동으로 인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 등)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론적으로 옵션매도로 인한 손실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파생상품 거래는 투자신탁재산에 큰 손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제한 및 환매연기위험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 따라 일정한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전 세계의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경제시장에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가진 전세계의 다양한 성장동력의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 서유럽 (영국,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과 일본은 세계 경제의 주요 시장입니다."

*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이 상품이 판매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상품은 예금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예금과 달리 투자자들은 한국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신탁재산은 수탁회사에 의해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3. 투자대상

가. 당해 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이 투자신탁은 자산을 최대 100%까지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함)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의 상품에 한함)의 방법으로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합니다.

1. 아래 제2호에 투자하는 이외의 모든 투자신탁재산은 피델리티코리아-글로벌 주식형 모재간접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2.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40% 이하의 범위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위 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위 가.의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1) 외국간접 투자증권	50% 이상 100% 이하	외국 법령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서 2)호의 간접투자증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 (이하 “외국간접투자증권”이라 합니다)
2) 간접투자증권	40% 이하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하 “간접투자증권”이라 합니다)
3) 수익증권 등	40% 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는 것 (이하 “수익증권 등”이라 합니다)
4) 국내외의 금리 스왑	국내외 금리스왑거래. 단,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 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5)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	위탁증거금 기준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또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주식 및 외국 채권 관련 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6) 주식 및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하 (장내파생상품 포함)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 상응하는 주식 및 채권 또는 외국주식 및 외국채권과 관련되는 장외파생상품 (“주식및채권관련장외파생상품”)
7) 기타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통상적으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하로 합니다. 단,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자산운용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자산운용회사는 법시행령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회사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1)호 내지 4)호 및 7)호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정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내용
5. 투자신탁재산을 구성하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위 1)호 내지 4)호 및 7)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신탁재산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4. 투자제한

가. 당해 투자신탁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나. 모투자신탁

(1) 자산운용회사는 모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탁회사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1.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77조에서 정하는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2.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3.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모투자신탁 재산 총위험평가액이 모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5.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자산운용회사 (외국간접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외국에서 발행•창설 또는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자산운용회사를 제외합니다)가 운용하는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외국간접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6호 내지 9호에서

도 동일함)에 투자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한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총발행수익증권수의 20%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8. 다른 재간접투자기구의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사모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10. 자투자신탁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투자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보수 및 수수료의 합이 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행위

(2) 모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 모투자신탁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모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위 3.나.의 표의 5)호 내지 6)호의 투자한도 및 4.나.(1).의 1호 내지 7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모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3.나.의 표의 5)호 및 4.나.(1).2.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제한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II. 자산의 평가

1) 당해 투자신탁

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2) 모투자신탁

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 또는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합니다.

(1)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주식(“등록주식”):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상장주식 또는 등록주식의 최종시가

(2) 비상장주식 및 비등록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 장내파생상품: 법 제2조 8호에 규정된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4)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합니다):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5) 비상장채권 (위 4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합니다):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6) 외화로 표시된 유가증권인 상장주식 및 상장채권: 그 유가증권을 취득한 국가에 소재하는 유가증권시장의 최종시가 또는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7)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외화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거래일의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중개회사가 매매기준율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외국의 뉴스통신사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외국환중개회사에 제공하는 환율이 있는 경우 그 환율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그 환율을 참고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환 중개회사로부터 관련 환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평가회사로부터 제공된 환율정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8) 기타자산: 아래와 같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

- 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평가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간접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 외국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다만, 외국 시장에 상장되거나 등록된 외국간접투자증권은 그 외국간접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산정됩니다.
-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 비상장 외화표시증권: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한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외화표시증권에 적용되는 환율을 결정함에 있어, 외화표시상장주식 및 외화표시상장채권에 적용되는 환율의 결정방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의 선정기준

중개회사를 이용하지 않으므로 해당없음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가. 과도한 매매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장기투자를 목표로 설정 및 운용되며 과도한 매매를 지양합니다. 투자재산에 대한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전략을 방해하고 운용 비용을 증가시켜 투자신탁의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시차를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자, 또는 당해 투자자가 단기매매나 과도한 매매 패턴을 보이거나 이 투자신탁의 운용에 방해가 되거나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투자자들의 수익권 매입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90일미만 동안 보유하는 거래는 과도한 매매도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운용회사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과도한 매매를 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해 투자자의 거래내역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순한 하나의 예에 불과하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투자자가 단기매매 또는 과도한 매매를 하고 있는 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여러 가지 요소를 검토하여 최종적으

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간접투자기구에 대한 투자자의 거래내역 및 공동으로 관리되는 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가.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기준일의 제6영업일(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7영업일) 전의 날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나.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1)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는 환매를 연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현저한 거래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나.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환매가 연기된 경우
   다. 전쟁, 홍수, 폭풍, 테러 또는 기타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의 공정한 평가가 곤란하여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어느 영업일에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자산운용회사는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이내에 환매연기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환매연기일로부터 6주 이내에 신탁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6)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따릅니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재개시 환매금의 지급방법
3. 부분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의 처리방법

(3)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5)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지체없이 신탁약관에서 정한 일정한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6) 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을 지급합니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7)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자산운용회사는 그 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다. 환매연기 기간 동안 매수 및 환매신청의 처리

상기 라.에 따른 환매연기 이후, 환매연기 기간 동안 수령한 수익증권의 매수 및 환매신청은 환매연기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제1영업일에 수령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상기 라.에 따른 환매연기 기간 동안에는 신탁약관에 따른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1)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신탁약관에서 정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3) 자산운용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4) 자산운용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습니다.

(5)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증권의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수탁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분배관련 유의사항

가. 신탁계약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시 상환금등의 지급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등을 공제한 후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합니다. 판매회사는 해당 모든 조세 및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이후 수탁회사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에서 정하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이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로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가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또는 수탁회사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100-101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 서울파이낸스센터빌딩 4층, 전화번호: 3783-0901
회사연혁	2002년 8월 설립되었으며(설립당시 상호는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임), 2003년에 투자자문업 등록을, 2004년 12월 8일에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12월 10일에 자산운용업인가를 받아 그 상호를 "피델리티 투자자문 코리아 주식회사"에서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2006. 12. 31 현재 자본금은 100억원이며 100% 소유주주는 Fidelity International Limited입니다. 피델리티자산운용 주식회사는 한국의 일반 투자자 및 기관 투자자들에게 투자신탁상품, 자산운용 및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산운용에 대한 Fidelity International Limited의 폭넓은 해외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산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 투자자들에게 장기 투자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

[회사가 속해 있는 기업집단의 개요]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북미 지역을 제외한 세계의 주요 시장에서 개인 및 기관 투자자에게 자산 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0여년 동안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2,766억 달러에 해당하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버뮤다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3개국에 지사를, 8개국에 리서치 및 인베스트먼트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는 비상장 기업으로서 독립성을 갖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우수한 상품을 개발,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성공의 핵심에는 자금운용에 대한 접근이 있습니다. 실험되고 입증된 명확한 투자철학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한 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관된 투자과정과 접근은 과거실적과 많은 수상경험이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의 뮤추얼 펀드 사업은 직접판매 또는 판매대행회사를 통해 피델리티 인터내셔널 리미티드가 현지 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국가의 현지 투자자들에게 투자서비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기업연금사업부는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 시장에서는 확정기여형(DC)과 확정급여형(DB)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69	1969	1973	1979	1981	1982	1986
버뮤다에 Fidelity International 설립	동경사무소 개설	런던사무소 개설	영국 단위형 신탁회사 설립	홍콩사무소 개설	기관투자자용 영국 연금 사업 개시	대만사무소 개설

1990	1991	1992	1994	1996	1997	1998
네덜란드 사무소 개설	룩셈부르크 사무소 개설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개설	파리 사무소 개설	쮜리히 및 시드니 사무소 개설	스톡홀름 사무소 개설	마드리드 사무소 개설

1999	2000	2001	2003	2004
FIL 자산은 US$ 1,000억원에 달함. **한국 지점사무소 개설**	두바이, 밀라노, 비엔나, 아일랜드, 제네바 및 바르셀로나 사무소 개설. Fidelity Investor Centre가 런던에서 새로운 사무소 개설	델리 사무소 개설	싱가포르 사무소 개설 **한국 투자자문회사 설립**	**중국 사무소 개설 한국자산운용회사 설립**

[Fidelity Investments의 수상내역]

2006	유럽 <스탠더드 앤 푸어스 2006년>, 3년 연속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리퍼상(Lipper Fund Awards) 2006>, 3년 연속 채권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2005 올해의 펀드 매니저>
2005	유럽 <스탠더드 앤 푸어스> : 2년 연속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리퍼상> : 2년 연속 채권 운용 그룹 부문 최상급 영국 머니 오브저버 (Money Observer) 상 : 모든 펀드 부문 최상급, 지난 10년간 5회 수여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 : <2004년 올해의 펀드 매니저>

2004	홍콩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2003년도 올해의 펀드매니저, 테크놀로지 (3년 이상), 유럽 성장형 (5 & 10 년 이상) 및 일본 (10년 이상) 펀드 1위. 홍콩 - 2004년도 리퍼(Lipper) 상, 주식형 유럽 및 혼합 자산 유럽 분야 1위 싱가포르 - 스탠다드 앤 푸어스 2004년도 투자상, 주식형 유럽 (3 & 5년 이상), 주식형 미국 (3 & 5년 이상), TMT 글로벌 (3년 이상) 및 자산 배정 - 유럽 뉴트럴 (3년 이상) 분야에서 1위
2003	로이터스 기관투자자 조사, 아시아 및 유럽 주식형 전반적인 회사 등급(매수)에서 1위 Global Investor Annual Awards, 일본 주식형 1위, 하이일드 채권형 2위
2002	Investment Week, "올해의 그룹상" 수상
2001	로이터 조사 - 최고의 펀드 운영 그룹, 유럽 대형주, 유럽 소형주, 영국 대형주, 영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2000	로이터 조사 - 최고의 펀드 운영 그룹, 유럽 대형주, 유럽 소형주, 글로벌 이머징 마켓: 아시아, 글로벌 이머징 마켓: 라틴 아메리카, 홍콩 & 중국 주식, 영국 대형주, 영국 소형주, 미국 대형주, 미국 중소형주
2000	로이터 조사 - 최고의 개인 펀드매니저, 홍콩 & 중국 - Stephen Ma 글로벌 이머징 마켓: 아시아 - 팀 미국 중소형주 - 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법 제91조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한편,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법령상의 이해관계인과 거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간접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법 제9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주요 업무

가. 자산운용업무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영위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2)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3) 투자회사재산의 운용

나. 업무위탁

(1)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일반사무관리회사로 HSBC 펀드서비스(주)를 선임하였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및 결정, 이 투자신탁의 활동과 관련한 장부, 기록 및 명세서의 보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장부 등을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의 열람을 위해 제공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제1부 III. 2.에 기재된 바와 같은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의 자산에서 지급됩니다.

(2) 증권예탁결제원에 대한 업무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3) 계열회사의 활용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 위탁

자산운용회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투자신탁재산의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운용 및 운용지시에 관한 업무를 피델리티 인베스트먼츠 매니지먼트 홍콩(Fidelity Investments Management (Hong Kong) Limited)("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라 합니다)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1981년 설립되어 홍콩의 증권선물위원회(Securities and Futures Commission)에서 자산운용업무의 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Fidelity Investments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에 대한 조사, 투자 및 거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내에서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업무를 담당할 자산운용자는 Ms. Pek Ng.입니다.

성 명	나이	주요경력	협회등록번호	학 력
Ms. Pek Ng	42	Ms. Pek Ng는 17년 이상 금융업에 종사해왔습니다. 그녀는 1996년 계량분석(Quantitative Analysis) 어소시에이트 디렉터(Associate Director)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입사하였으며 2002년부터 포트폴리오 매니저로 근무하였습니다.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Ms. Ng는 기관 및 소매기금, 연기금 및 기관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비롯하여 수많은 자산할당 및 재간접투자기구의 포트폴리오를 운용하였습니다.	해당없음	공인 금융분석가 미 캘리포니아주 Mills College 학사 (우등)

[운용전문인력의 기타 운용현황]

성명	운용 구분	운용펀드수	운용자산
Pek Ng	단독	26	미화 3,821.7백만 달러
	공동	없음	없음
계		26	미화 3,821.7백만 달러

* 위 운용펀드수는 일반투자자용 펀드, 기관투자자용 펀드, 개별 일임계좌를 포함하고 있음. 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따로 투자자에게 통지하지 않음.

1981년 설립된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는, 2006년말 현재 해외자산운용팀에 소속된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전문인력 480명 중 61명을 포함한, 총 285명의 인원이 일하고 있으며,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는 최고투자관리자인 Michael Gordon이 이끌고 있습니다. 2006년 6월말 현재 미화 238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바, 동 운용자산규모의 절반 이상이 기관투자자를 위한 것입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업무위탁 사실에도 불구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자산운용회사에게 있습니다. 해외위탁자산운용회사에 대한 보수는 자산운용회사 보수에서 지급됩니다.

다. 의무 및 책임

(1) 자산운용회사의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투자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2) 자산운용회사의 책임: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최근 2개 사업연도의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2006.3.31	2005.3.31	항목	2006.3.31	2005.3.31
유동자산	12,316	11,244	영업수익	15,504	11,482
고정자산	3,705	3,013	영업비용	13,713	10,826
자산총계	**16,021**	**14,257**	**영업이익**	**1,791**	**656**
유동부채	4,333	3,929	영업외수익	8	5
고정부채	334	96	영업외비용	293	0
부채총계	**4,667**	**4,025**	**경상이익**	**1,506**	**661**
자본금	10,000	10,000	법인세비용	384	253
이익잉여금	1,354	232	**당기순이익**	**1,122**	**408**
자본총계	**11,354**	**10,232**			
부채 및 자본 총계	**16,021**	**14,257**			

4. 운용자산 규모

(2006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억좌)

종 류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MMF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재간접	실물자산	총 계
수탁고	5,935	243	191					4,052		10,421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성 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 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장성문	38	투자 서비스 담당 이사	14개	37,894억원	[주요 경력] 주식운용 및 리서치 - LG투신운용 (8개월) - 메리츠투자자문 (4년) 보험사 자산운용 - 삼성화재 (2년) [학력 및 기타 이력] 국제재무분석사(CFA) 서울대학교 경제학 학사 존스홉킨스 대학 재무학 석사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에 의거, 본 자펀드는 최고 100%까지 해당 모펀드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제3부 I. 2. 나. 3) 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펀드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실제 모펀드의 운용은 해외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전문인력 (작성일 현재 펙 응)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II. 판매회사

1. 판매회사의 개요

[동양종합금융증권,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5 동양종합금융증권빌딩]

1962.6 회사설립
2000.4 '99 코스닥등록 공모실적 업계1위 (금감원 자료)
2000.12 업계 최초 외평채 판매 개시 및 2000년 판매실적 1위
2001.11 동양증권-동양현대종금 합병, 동양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출범
2002.11 Wealth Management 사업 본격실시 – 골드센터 오픈
2002.12 금융상품 수신고 10조원 돌파

[메리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10 메리츠증권]

1973.2 한일증권주식회사 설립
1990.10 한진투자증권㈜로 상호 변경
1992.1 증권거래소 상장
1996.7 서울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설립
2000.3 메리츠증권으로 사명 변경
2000.4 한진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2001.8 투자자문업 허가 취득
2003.11 투자일임업 허가 취득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1동 259-4]

1967.10 창립
1972.6 증권거래소 상장
2000.3 증권업무 제휴 개시
2000.11 부산지역 주금고 은행으로 선정
2002.5 메리츠증권과 전략적업무제휴를 통한 증권서비스 실시
2003.7 증권거래소 우수공시법인 선정
2004.10 2004년 사회공헌기업대상의 지역사회발전부문대상 수상

[우리은행,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203]

1999.1 한빛은행 설립
2001.4 우리금융그룹 출범
2002.5 우리은행으로 행명 변경
2004.8 우리은행 상반기 순익 5,909억원으로 업계 최고 시현
2004.11 우리금융, LG투자증권 자회사로 편입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제일은행,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100]

1929.7 조선저축은행으로 창립

1950.5 한국저축은행으로 행명 변경
1958.12 제일은행으로 행명 변경
1993.12 국내은행 최초로 3개년 연속 경영평가 1위
2000.1 해외투자 유치-뉴브리지캐피털 5000억원 출자

[한화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5]

1962.7 성도증권㈜ 설립
1977.11 상호변경 (제일증권)
1996.10 한화증권으로 상호변경
2001.3 한화증권 랩어카운트 상품(EZ-WRAP) 판매 개시
2003.3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설
2004.1 르네상스지점 개설 (PB 복합점포)
2004.6 우체국과 연계계좌 서비스 개시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25번지]

1981. 부산지점 개설
1984. 서울지점 개설
1986. 미들랜드은행 합병
1989. 자본 확충
1998.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지점 개설
2000. 분당지점 개설, 서초지점 개설
2001. 방배지점 개설
200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지점 개설

[굿모닝신한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2 굿모닝신한타워]

1973.4 효성증권 설립
1983.12 상호변경 (효성증권->쌍용투자증권)
1984.5 해외증권업 허가
1999.5 굿모닝증권으로 상호 변경
2000.1 온라인트레이딩 전문브랜드 goodi 출범
2001.3 굿모닝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8 굿모닝신한증권 출범
2003.12 굿모닝 골드랩 출시
2004.3 업계최초 대만증권거래소 시세 제공

[삼성증권, 서울시 종로구 종로2가 6 종로타워빌딩]

1992.11	삼성증권 출범
1996.11	수익증권 위탁판매 실시
1998.12	국내최초 뮤추얼펀드 판매 개시
1999.2	IMF이후 증권업계 최초 신용평가 A등급 회복(한국신용평가사)
2000.12	삼성투자신탁증권과 합병
2001.4	종합자산관리계좌 “FN Honors Club” 판매고 업계 최초 1조 돌파
2003.10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개시
2004.11	제1회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대상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상)

[우리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02-768-7000]

1969.1	한보증권 설립
1983.11	럭키증권으로 상호변경
1995.3	LG증권으로 상호변경
1999.10	LG투자증권으로 상호변경
2003.1	Wealth Management Center 오픈
2004.5	LG그룹으로부터 계열 분리
2004.12	우리금융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2005.4	우리투자증권 출범

[하나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3 하나증권빌딩]

1962.2	동남증권주식회사 설립
1986.11	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1990.3	국제업무 인가 취득
1992.7	상호변경 (보람증권주식회사)
1999.5	상호변경 (하나증권주식회사)
2003.2	IFR Asia “2002 Korea Bond House” 선정
2004.3	제9회 매일경제 금융상품 대상 수상

[한국외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181]

1967.1	한국외환은행 창립
1977.5	증권매매업무 취급
1978.4	국내최초 신용카드(비자카드) 업무 취급개시

1985.3 신탁업무 취급 개시
1987.12 서울올림픽 공인은행
1988.9 신탁수신고 1조원 돌파
1998.7 독일 Commerzbank의 자본 및 경영 참여

[신영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1956.1 신영증권주식회사 설립
1965.12 한국증권거래소 재등록
1995.8 신영투자신탁운용 주식회사 설립
1999.5 금감원으로부터 5년 연속 최우수증권사 지정
2001.7 랩어카운트 서비스 실시
2003.9 방카슈랑스 판매 개시
2003.11 투자일임업 등록

[교보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1949.11 회사설립 (구 대한증권)
1962.11 증권업 허가
1994.4 교보증권으로 상호 변경
1996.7 교보투자신탁운용㈜ 설립
1999.11 코스닥시장 등록
2001.12 CI 변경
2002.7 증권거래소 상장

[경남은행, 경상남도 마산시 석전동 246-1]

1970.4 경남은행 설립
1973.4 외국환업무 개시
1983.5 신탁업무 취급 개시
2001.3 우리금융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편입
2002.7 수익증권 판매회사 등록
2002.9 총자산 10조원 돌파
2004.12 자본금 2,590억원

[한국씨티은행, 서울시 중구 다동 39번지]

2004.2 씨티그룹 한미은행 투자(인수)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04.3 한미은행 상장주식 공개매수 공고

2004.7 한미은행 임시주총에서 상장 폐지 결의
2004.9 한미은행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2004.9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씨티은행 내인가

[현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4 현대증권]

1962.6 증권업 허가
1986 상호를 현대증권주식회사로 변경
1997 외국투자신탁증권 국내판매 대행업무에 대한 재경원 인가
1999.3 Buy Korea 출시
2001 투자자문업 등록
2004.5 일임형 랩 등록
2004.9 현재 자본금 6,989억 원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7-12 광주은행]

1968.11 설립
1973.2 한국증권거래소 주식상장
1975.11 서울지점 개점
1999.8 전국 지방은행 최초로 인터넷뱅킹 서비스 실시
2001.3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편입
2003.8 전산시스템 이전
2003.9 방카슈랑스 보험상품 판매 개시

[신한은행, 서울시 중구 태평로2가 120]

1982.7 신한은행 창립
1989.11 주식 상장
1998.6 동화은행 P&A 방식으로 인수
2001.9 신한금융지주회사 출범
2003.4 총수신 50조 돌파
2003.9 조흥은행 신한지주 인수
2003.9 신한지주 뉴욕증시 상장

[대우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

1970.9 동양증권㈜ 설립
1983.10 상호변경 (대우증권주식회사)
1999.10 대우그룹에서 계열 분리
2000.5 BESTez.COM 오픈

2000.5 한국산업은행으로 최대주주 변경
2001.2 종합자산관리 '플랜마스터' 개시

[한국산업은행,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3]

1954.4 한국산업은행 설립
1967.7 외국환은행업무 취급
1969.2 산업금융채권 일반매출
1989.1 신탁업무 취급
1999.5 국내최초 SOC채권 발행 주선
2001.7 본점이전 (영등포구 여의도동)
2003.9 방카슈랑스업무 취급

[하나대투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1968.12 한국투자공사 설립
1970.5 한국투자공사 증권투자신탁업무 시작
1977.2 대한투자신탁 영업 개시
1999.10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회사 등록
2000.6 증권사 전환으로 대한투자신탁증권㈜로 사명 변경
2003.6 사명변경 (대한투자신탁증권㈜ -> 대한투자증권㈜)
2007.7 사명변경 (대한투자증권㈜ -> 하나대투증권㈜)

[대신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8 대신증권 빌딩]

1962.7 삼락증권 설립
1975.4 대신증권으로 상호 변경
1988.9 대신투자자문 설립
1996. 11. 국내 최초로 종합계좌 시스템 가동
1998. 1. 대신인터내셔널 (홍콩) 설립

[하나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 1가 101-1]

1971.6 한국투자금융㈜ 설립
1991.7 은행으로 전환
1996.11 런던주식시장 상장
1999.1 합병 하나은행 출범
2000.4 Allianz Group 최대 주주로 지분 참여
2000.12 총 수신 40조원 달성

2001.3 하나알리안츠투자신탁운용㈜ 설립
2002.12 국내 3위 규모 통합 하나은행 출범
2003.2 하나생명보험㈜ 출범

[동부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번지]

1982.12 국민투자금융㈜ 설립
1988.9 동부투자금융㈜로 상호변경
1991.6 증권업전환 인가 취득
1991.7 동부증권㈜로 상호변경 및 증권업 영업 개시
1997.1 동부투자신탁운용㈜ 설립
2000.12 뮤추얼펀드 판매회사 인가 취득
2003.11 투자일임업 인가 취득
2004.5 ㈜겟모어증권중개 인수 합병

[한국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1]

1974.7 설립
1977.4 신탁형증권저축업무 개시
2000.6 종합증권사로 전환(한국투자신탁증권)
2000.6 한국투자신탁운용 설립
2001.9 금융상품연구소, 기업금융지원센터, PB센터 오픈
2002.5 부자아빠펀드 발매 개시
2003.9 방카슈랑스 시행
2005.1 부자아빠 골드플랜 서비스 개시
2005.6 한국투자증권출범

[유진투자증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유진투자증권빌딩]

1954.5 서울증권 주식회사 설립 (설립자본금 100만원),
1987.8 기업공개 (증자후 150억원) 및주식상장
1991.9 기업인수합병 (M&A) 주선업무 인가
1994.4 본점이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1996.5 수익증권 판매업무 개시
2003.9 방카슈랑스 업무 등록
2006.4 한일투자신탁운용(주)를 유진투자증권HTS자산운용(주)로 상호변경
제일선물(주)를 유진투자증권HTS선물(주)로 상호변경
2006.12 강찬수 대표이사에서 유진기업(주)로 최대주주 변경

2007.3 유진그룹 계열회사로 편입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18번지]

1967.10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
2002.05 납입자본금 금 6,606억원 (수권자본금 15,000억원)
2002.08 금융감독원 전국은행 민원 평가 1위 수상
2003.10 경영혁신대상수상(한국품질경영학회, 포브스코리아주관)

[메릴린치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이티드 증권 서울지점,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84번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9층]

1992.7. 메릴린치 증권 설립
2000.9. 금융감독위원회에 판매사 등록

2. 판매업무에 관한 사항

가. 판매회사의 업무

① 간접투자증권의 모집 및 매출
② 간접투자증권의 판매 및 환매
③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의 지급
④ 세금의 원천징수 및 납부
⑤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제신고 접수 및 처리
⑥ 기타 위의 각호에 부수되는 업무

나. 위탁판매계약체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투자설명서 제공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간접투자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판매회사에 제공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표준신탁약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의무 및 책임

가. 판매회사의 책임

①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간접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판매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판매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수탁회사·자산보관회사·판매회사·일반사무관리회사·간접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수탁회사의 개요

상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주소: 우편번호 100-161 서울시 중구 봉래동 1가 HSBC 빌딩 5층
전화: 2004-0000

[한국에서의 HSBC의 연혁]

1982	HSBC 부산지점 개설 (1920년대 대표사무소 폐쇄 후)
1984	HSBC 서울지점 개설
1986	Marine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88	Midland Bank 서울지점 취득
1998	개인금융서비스 시작, 삼성지점 개설
1999	압구정 지점 개설
2000.1.	개인금융센터 개설
2000.8.	분당지점 개설

2000.12. 서초지점 개설
2001.2. 방배지점 개설
2002.2. 광장지점 개설
2005 인천, 대전, 대구지점 개설

2. 수탁회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

가. 투자신탁 자산의 보관
나.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자산의 결제
다. 자산운용회사의 지시에 따른 환매 및 배당금을 지급
라.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준수 감독
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에 기재된 바와 같은 기타 업무
- 이자, 배당, 수익금, 임대료 등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인수
- 공사채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기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 수시로 수수료의 수령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의무 및 책임

가. 수탁회사의 선관의무: 수탁회사는 수익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투자신탁계약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운용행위 감시: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사항을 그 수익증권의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여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회사의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개요

회사의 상호: HSBC 펀드서비스(주)
주소: 우편번호 150-737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 교보빌딩 6층, 전화: 3771-9800

설립일: 2000년 3월 23일
등록일: 2000년 3월 23일
금융감독위원회 펀드 일반사무관리업무 등록: 2000년 8월 28일
HSBC 그룹으로 합류: 2003년 8월 1일

2.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

가. 투자회사 운영에 관한 다양한 사업활동
나. 투자회사 주식발행 및 해당 주식의 소유권 이전
다. 투자회사나 자산운용회사가 회사형 (뮤츄얼 펀드) 및 계약형 (단위형 신탁) 펀드 각각의 펀드 일반사무관리를 아웃소싱한 경우 해당 펀드의 기준가격 산정
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에 따른 다양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공시
마. 투자회사를 위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소집 및 운영에 관하여 일반사무관리업무
바. 투자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가 위임한 기타 업무

3. 업무위탁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의무 및 책임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요 업무

해당사항 없습니다.

제4부. 수익자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가.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수익자총회는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자 총회의 소집

(1)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본 조에 따른 통지 이후에 자산운용회사가 지정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합니다.

(2)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자산운용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 또는 실질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3년

간 계속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자산운용회사(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6)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다. 수익자총회의 운영

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합니다. 수익자총회는 자산운용회사가 결정하는 특정 일자 현재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수익자(대리인에 의한 경우 포함)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및 발행된 수익증권 의결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신탁약관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출석한 수익자(직접 또는 대리 불문)의 의결권의 과반수 및 발행된 수익증권 의결권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라.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1)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요구하는 양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 서면에 포함되어야 하는 상세한 정보는 수익자에게 발행된 통지서에 포함됩니다.

(2)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 의결권

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합니다. 수익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대리인은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위임장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의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에 비례하여 자산운용회사가 행사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자투자신탁과 1개의 모투자신탁으로 구성된 경우를 가정하여 비례적 의결권 행사를 예시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자투자신탁 의결내용	모투자신탁 보유좌수	모투자신탁 의결내용
자투자신탁 A 1,000좌	찬성 500/반대 500	200좌	찬성 100/반대 100
자투자신탁 B 1,000좌	찬성 600/반대 400	100좌	찬성 60/반대 40
자투자신탁 C 1,000좌	찬성 800/반대 200	1,000좌	찬성 800/반대 200

바. 수익자총회의 연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회의 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의 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수익자총회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총회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일전까지 아래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연기수익자총회의 회의개시 예정시각에서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출석한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증권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과반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출석한 수익자의 수익증권 총좌수로써 수익자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 외에 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판매회사 등이 받는 보수와 관련한 신탁

약관의 변경,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신탁기간의 변경,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수익자총회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전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의결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본 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신탁약관 제22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가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아. 수익자명부 관리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증권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증권예탁결제원은 관련 법령·이 투자신탁의 신탁약관·위탁계약서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시) 수익자총회 개최 내역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최초 설정 투자신탁이므로 수익자총회 개최내역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제반 조세, 비용 및 경비를 공제한 후의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상환금등”)을 판매회사를 통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신탁약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인 자투자신탁의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장부, 서류의 열람 및 등, 초본 교부청구권에 관한 사항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에게 투자설명서, 신탁약관, 일반사무관리계약 및 이 투자신탁에 관한 투자운용위임계약 등 이 투자신탁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청시에는 수익자가 장부 및 서류를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를 진술해야 합니다. 장부 및 서류 열람 등 요청이 수락되면 수익자는 정상적인 영업시간동안 자산운용회사의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과 관련한 장부 및 서류의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에게 자산운용회사가 수익자에게 통지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사본을 제공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의 자산명세서, 자산매매 거래내역서, 기준가격 대장 및 재무제표와 관련하여 이 투자신탁의 장부 및 서류를 검토하거나 그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자산운용회사에게 요청하며 요청 받은 정보는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법 제125조 및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른 제한 하에서만 제공됨을 투자자들은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i) 이 정보의 공개 또는 제3자의 사용은 이 투자신탁의 다른 수익자들에게 손해를 끼쳐서 이 투자신탁의 성과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ii) 자산운용회사는 다른 사람들이 자산운용회사 고유의 투자방법 및 기술을 이용하고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희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정보를 엄중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iii) 이 투자신탁의 데이터를 시차 없이 즉시 공개하는 것은 수익자들의 단기 투자전망에 영향을 미치며, 투기업자 및 기타 전문 트레이더들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방식으로 정보를 악용할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iv) 이 투자신탁의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과 관련하여 수익자들의 이해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수탁회사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회사의 투자 활동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감독을 하게 됩니다.

수익자에게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상기 사유는 수익자의 최선의 이익을 위함이라는 것이 자산운용회사의 견해입니다. 자산운용회사는 위 법 제125조 및 법 시행령 제 106조에 따른 제한 범위 내에서 그 재량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더욱 신속히 그리고 자주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재판관할에 관한 사항

이 투자설명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가. 신탁약관의 변경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는 수정된 신탁약관을 체결함으로써 이 투자신탁을 규율하는 신탁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신탁약관의 규정에 따라 신탁약관의 변경을 위해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서 신탁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후에 그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으로 인한 수정 또는 수정사항이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자산운용회사 및 수탁회사가 판단한 경우 등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가. 정기공시

1) 경영에 관한 보고: 자산운용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영업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매 분기의 정기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산보고서 및 정기보고서를 제출 받은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는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경영에 관한 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부터 4월 이내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과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매 분기말(결산일을 포함하는 분기를 제외)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신탁약관의 열람**: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설정일부터 신탁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일 후 3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자산운용회사의 본점 및 판매회사의 본점 및 지점에 신탁약관(모투자신탁 신탁약관 포함)을 비치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신탁약관을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이를 비치한 것으로 봅니다.

4) **운용실적의 공시**: 자산운용협회는 간접투자재산의 순자산가치의 변동내역이 포함된 운용실적을 간접투자기구의 종류, 투자대상, 매입자산유형 등으로 구분 비교하여 그 결과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자산운용보고서, 영업보고서, 사업보고서

1)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3개월마다 법령에 의한 사항을 기재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해당 분기말로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하며, 자산운용보고서는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이거나 자산운용보고서를 수령하지 않기로 한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영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한 서류를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사업보고서**: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탁회사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1)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즉 매년 12월 31일) 후 2월 이내에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된 수탁회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

하여 판매회사를 통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유한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수익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수탁회사는 작성한 수탁회사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합니다.

2) **감사보고서**: 회계감사인은 간접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포함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와 그 간접투자기구의 판매회사, 수탁회사에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모투자신탁의 경우 자산운용보고서와 수탁회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아니하며 자투자신탁의 자산운용보고서 및 수탁회사보고서가 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기공시 사항(보고서 포함)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시공시

가. 약관변경사항에 대한 공시

신탁약관이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변경되면,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모든 수익자에게 변경통지를 행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신탁약관이 수익자총회의 결의 없이 변경되면, 신탁약관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하여 1회 이상 공고합니다.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 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수익자가 공시일부터 1월 이내에 판매회사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변경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수익자가 신탁약관의 변경에 대하여 1월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모투자신탁 신탁약관의 변경에 관한 공시는 이하의 나. 수시공시에 기재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신탁약관에 따라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공시사항은 한국에서 발행되는 중앙일보 및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합니다.

나. 수시공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4) 이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5) 자산운용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6)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7)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재무건전성 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법령이 정하는 사항
(8) 모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로부터 여하한 사항의 발생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그 내용
(9) 법령상 요구되거나 한국 법원 또는 규제당국의 재량에 의한 공시

※ 수시공시 사항은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소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협회 (http://www.amak.or.kr) 전자공시사이트에서 확인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의결권 행사

투자신탁 수익권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제4부 I. 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기타 장부 및 서류에 관한 공시요청은 제4부 I. 3.에 기재한 방침이 적용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 판 매 일 : _____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_____

□ 판매직원 : 직위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_____그 주요내용(환율변동 위험 포함)을_____.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